

문서번호	일자리지원 과-100586	★주무관	일자리정책팀장	일자리지원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1. 18.	김기옥	김선옥	심원택	代김호식	하철승	11/18 박경수
공개여부	부분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	
		예산팀장	박종식				

『2015.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』 개최 결 과 보 고

2015.11.17.

강 북 구
(일자리지원과)

2015.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

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도 우리구 생활임금수준 및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심의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함

I 회의개요

- 개최일시: 2015. 11. 09(월), 10시 30분
- 장 소: 기획상황실
- 참석위원: 전체 위원 9명 중 8명 참석
- 심의결과: 붙임 의결사항 참조
- 주요내용: 위촉장 수여,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, 안건 심의
- 심의안건: 2016년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등 3건
 - 생활임금액
 - 생활임금 적용대상
 - 생활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

II 개최결과

-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 - 참석위원 현황

연번	직위	성명	소속	참석여부	비고
1	위원장	김희동	주민생활국장	참석	당연직
2	부위원장	권성연	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	참석	노무관련전문가
3	위원	조상연	기획예산과장	참석	당연직

연번	직위	성명	소속	참석 여부	비 고
4	위 원	심원택	일자리지원과장	참석	당연직
5	위 원	한동진	구의원(주민대표)	참석	주민대표
6	위 원	김진희	에이스노무법인 대표	참석	노무관련전문가
7	위 원	박리혜	세무사 대표	참석	경영자대표
8	위 원	황선자	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	참석	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
9	위원	최봉	서울연구원	불참	노무관련전문가

2016년 강북구 생활임금 결정 사항

- 생활임금 수준: 시간급7,130원/ 월1,490,170원(월 209시간 기준)
-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: 강북구 및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
 - ※ 적용제외
 - 기타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
 -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공무직지부간 임금·단체협상 대상
-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: 기본급(통상임금) + 모든수당

III 향후계획

- 2016년 예산편성 시 생활임금 반영: 2015. 11월 중
- 2016년 생활임금 고시: 2015. 12월 중
- 2016년도 강북구 생활임금제 시행: 2016. 1월 ~12월

2015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사진



- 붙임 1. 2015.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
2. 회의록 1부. 끝.